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강사’ 를 ‘체육전문지도사’ 로 명칭 변경〉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17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1.
3. 회부연월일 : 2024. 8.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용된 법률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 <u>스포츠강사</u>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체육전문지도사</u> ----- ----- <u>제2조제1호</u> ----- ----- ----- ----- -----.
제13조(<u>스포츠강사</u> 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u>스포츠강사</u> 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스포츠강사</u> 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u>체육전문지도사</u> 의 배치) ① ----- ----- ----- ----- <u>제2조제1호</u> ----- ----- <u>체육전문지도사</u> ----- -----. ② ----- <u>체육전문지도사</u> ----- ----- -----.

1. 인용된 법률 조문의 오류 시정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는 “스포츠강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은 인용 조문을 초등학교를 지칭하는 같은 조 제1호로 수정하여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임¹⁾.

참고로,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정(1997.12.13.) 당시에는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정일(2012. 1.26.)과 시행일(2013. 1.27.) 사이에 「초·중등교육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1384호, 2012. 3. 21.)되면서 제2조제1호로 이동되어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음.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스포츠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명칭 변경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

스포츠강사는 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 ‘학교체육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08년도 2학기부터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확대됨.

2008년 도입 당시 ‘체육보조강사’라는 명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시·군·구 체육회에서 계약하여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부터 교육청에서 선발·배치하되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음²⁾.

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스포츠 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할 경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족하는 실효성 있는 효과 발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명칭 변경으로 인해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용어 사용과 직종 관리 등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³⁾. 특히, 현재 스포츠 강사 명칭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도 않아 명칭 변경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스포츠강사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86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3) 교육부에 따르면 12개 시·도교육청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함.